

- 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허가시설 -

인테리어 공사 지침서

목 차

I. 공통사항	1
II. 건축공사	3
III. 기계설비공사	5
IV. 전기공사	7
V. 소방설비공사	8

I. 공통사항

1. 본 지침서는 자갈치시장 인테리어 공사에 적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시설물 전반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 있다.
2. 본 지침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 ‘관리주체’라 함은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 ‘사용자’라 함은 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련법규, 부산시 조례, 공단 규정을 준수하고,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 전기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시행규칙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실내 공기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시행령/시행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폐기물처리법/시행령/시행규칙
 - 물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 기타관련 법규
4.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중이용업의 영업허가(신고, 허가 등)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사용인이 관할소방서로부터 완비증명을 받아야 한다.
5. 사용자는 추가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5.26]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의 해당 업종에 한함.
6. 시설물의 안전성과 전체적 조화로운 품질을 확보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시공에 관한 지도·감독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공사 시행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은 사용자가 해결하여야 한다.
8. 사용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에게 현장설명 요구와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

9. 사용자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공사업체를 선정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7일전 설계도서(도면, 예정공정표, 기타 재료 품질 등 관리사무소가 확인을 요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검토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면은 실내마감도(입면도, 평면도), 전등·전열·통신설비 평면도(배선도, 등기구 내역 포함), 소방설비 평면도 중 해당하는 공종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모든 자재는 KS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단이 확인한 자재는 KS품이 아닐 지라도 사용할 수 있다.
11. 사용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와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을 공사 기간 동안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대리인계(공사 담당자 비상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단으로부터 부적합 지적을 받거나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을 경우 즉시 해당 공종 작업을 중단시키고,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13. 기 시공한 타 공종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손상시켰을 경우 사용인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4. 사용자는 작업과정에 발생된 폐기물은 발생 즉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5. 공사 안전, 품질, 공정 확보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합한 시공자라고 판단될 경우 공단은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6. 사용자를 위하여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모든 작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7. 현장 내에서의 음주는 절대 금하고, 음주자는 현장 출입을 금지한다.
18. 현장 내에서는 절대 금연한다.
19. 공사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발생한 안전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20. 용접기, 산소절단기 등 화기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사용 장소, 기간, 장비목록 등을 관리 주체의 확인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 용접기는 전격방지기 부착된 제품사용
 - 산소용접기는 역화방지기 부착된 제품사용
21. 그라인더 절단 작업 시 불꽃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2. 작업장 주변은 비산 방지용 비닐 및 기 시공된 바닥은 골판지, 비닐매트로 보호하여야 한다.
23.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선은 접지형을 사용한다.
24. 공사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는 ABC급 소화기 3kg 이상을 현장 내 상시 2개 이상을 비치 하여야 한다.
25. 현장 내 시너류 등 휘발성, 인화성 물질의 보관을 금한다. 도장 관련 시너류는 지정장소에서 희석 작업 후 현장 내 반입하고, 남은 자재는 외부에 별도 보관한다.
26. 인화성 및 독성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작업은 국소배기장치 등의 충분한 환기장치와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27. 불가피한 야간작업 시 사전에 공단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8. 기타 이견이 있는 사항은 시설사용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공단이 협의하고 결정한다. 단, 안전과 품질에 현저한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의견을 따른다.

II. 건축공사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설계 시 건축자재(단열재, 바닥재, 도료, 코킹제, 벽지, 접착제 등)는 친환경마감재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3. 먼지 및 도장, 본드 등의 냄새 발생시 송풍기, 비닐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외부로 환기 유도하여야 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는 가구집기, 커튼, 카페트, 실크벽지(일반 벽지제외), 시트지 취부 시 방염처리 제품을 사용하고 관할 소방서의 방염신고 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용 기계장비는 안전장치가 설치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벽체공사

가. 매장벽체는 건식(Dry Wall)으로 메탈스터드 위 석고보드 9.5mm 2겹(양면) 시공을 기본으로 하고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스터드 규격(mm)	스터드 간격(mm)	적용층고(mm)
C-65×45×0.8t	@ 450 OR @ 600	4,460 이하
C-100×45×1.0t	@ 450	7,000 이하
CH-100×35×0.8t	@ 600	6,500 이하
C-65×45×0.8t(2EA)	@ 450	5,600 이하

- 나. 경량벽체 시공 시 런너는 천정 슬래브 면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다. 방화벽이 아닌 경우는 천정 마감선 상부로 150mm까지 마감하고, 방화벽인 경우 1.5시간 이상의 내화구조(메탈스터드 C-100×45×1.0t + THK. 50 암면 60K + THK. 12.5 방화석고보드 2겹(양면))로 상부 층 밑까지 벽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 벽체공사 및 구획 마감 시 소방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마. 방음이 필요한 시설은 별도의 방음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 바. 벽체 기둥 마감 시 모서리 부분은 반드시 코너비드를 부착한다.
- 사. 샌드위치 패널(스티로폼 내장형) 및 목조 구조들은 사용을 금한다.

7. 천정공사

가. 홀, 판매장 및 주방 천정고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 범위에서 기 시공된 천정고와 조화롭게 구성하여 거주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나. 고소작업 시 규준틀비계 및 알루미늄 사다리를 사용하고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다. 경량철골천장틀 설치기준

- 1) 인서트, 행거볼트, 캐링채널 간격 : 900~1,200mm
- 2) M-BAR 간격 : 300mm로 설치
- 3) 마이너 채널 간격 : 1,800mm 설치하고 고정볼트는 견고히 고정

- 4) 달대의 고정은 천정면에 직접 고정하고 공조, 소방, 전기 등의 달대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5) 공조 디퓨저, 조명기구 등의 설치를 위하여 천정을 타공한 경우 캐링채널 2개소를 반드시 인서트 작업, 행거볼트 및 행거로 보강하여야 한다.

8. 바닥공사

- 가. 바닥재는 방염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주방바닥 돋움, 방수, 트랜치(배수구) 설치, 벽체 조적시공 등 적재하중 증가에 따른 구조문제가 수반되는 사항은 관리주체 사전검토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다. 주방바닥 방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세심한 배려와 철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 라. 바닥천공 작업 시 구경 및 수량 등 사전 관리주체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집기공사

- 가. 벽체, 벽면에 고정하는 진열장, 장식장 등 집기는 방염처리를 하고, 소방완비필증 (시험성적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각재 및 이면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 승인된 수성방화코트(방염도료) 3회 이상 도포
 - 2) 전면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 승인된 중도, 상도용 방염도료 마감

Ⅲ. 기계설비공사

1. 주방 내에는 도시가스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기구의 설치는 금지한다.
2. 가스배관 공사 시에는 가스배관의 방식도장을 2회 이상 실시 후 표시도색(노란색 도장 또는 노란색 스티커)을 한다.
3. 연소기구의 설치 시 가스 연소기구의 사양(사용압력, 발열량 등)을 제출한다.
4. 가스공사 후에는 도시가스공급업체에 대한 인허가 관련 일체를 진행하고 완료 후에 완성 검사필증 사본을 제출한다.
5. 가스 튀김기나 중화렌지 설치 시에는 주위의 벽면에 차열판을 설치하고, 튀김기는 안전장치로 과열방지 및 경보기능이 내장된 정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가스공사에는 가스 경보설비 공사(누설감지기, 자동차단안전밸브(ASV), 경보판넬 등)를 포함 한다.
7. 가스공사에는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2차 배관 일체를 시공한다.
8. 가스계량기는 가스기구의 총 사용량에 근거한 등급을 적용하여 시공한다.
9. GAS ALARM
 - TYPE : 가스누출검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된 경보기
 - 경보방식 : SPEAKER 및 RED LAMP 작동
 - POWER : 220V/60HZ/500W(단상), 내부 충전지 내장형으로 정전 시에도 동작 가능
10. CONTROL PANEL 및 전기계장
 - 전기 계장 부품은 모두 방폭형으로 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시설 완성 검사 시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각 주방용 판넬은 밸브 개폐스위치가 각각 있어야 한다.
 - 기기 및 재료는 특기하지 않는 한 한국공업규격 형식승인기준 또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검사기준에 따른다.
 - 기기에는 제조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한다
11. 판넬 내부에는 중앙감시실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단자를 제공하여야 한다.
12. 가스배관은 KSD 3631(연료가스 수송용 탄소강관), 밸브는 가스용 볼밸브를 적용한다.
13. 주방은 가스의 누설 시 주방 이외의 공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별도의 구역으로 구획 한다.
14. 후드공사는 기 시공된 배기덕트에서 주방후드까지의 연결공사를 포함한다.
15. 주방내의 후드 설치 시 세라믹필터를 설치한다.
16. 후드의 풍량에 대한 사양을 제출한다.
17. 배기후드의 면풍속은 0.8~0.9m/s로 설계 시 반영한다.
18. 배기후드의 배기구 및 급기구에는 VD(볼륨댐퍼)를 설치한다.
19. 주방 배기덕트는 STS를 적용한다.
20. 공조의 급, 배기 디퓨저의 추가 설치 시에는 반드시 관리주체와 협의 후 설치한다.

21. 급·배수의 공사는 기 설치된 급수계량기 이후 2차 배관 일체를 시공한다.
22. 공사 진행시 코어(CORE) 작업은 불가함.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 후 시행한다.
23. 급수계량기 이후 2차 배관의 공사를 실시 후 누수여부를 담당자와 확인하여야 한다.
24. 배수관 공사 시에는 점검이 용이하도록 바닥에 소재구를 설치한다.
25. 배관재의 구분
 - 급수(냉수) 배관 : KSD 3576(배관용 스텐레스관, SUS 304 용접식)
 밸브 : 스텐 볼밸브
 - 급탕(온수) 배관 : KSD 5301(동관 L형 이상)
 밸브 : 황동 볼밸브
 - 오배수관 : KSD 3507(PVC 이중관)
 - 급수, 급탕배관의 보온재는 GLASS WOOL 24K 25mm를 적용한다.

IV. 전기공사

1. 전기공사는 경력을 가진 유자격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자료(사업자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등) 사본을 제출한다.
2. 전기자재는 국가통합인증마크 KC 또는 KS, 전, 품자 표시 품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한다.
3. 전선의 다음 규격의 동등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 분	간 선	조 명	전 열	통 신
전선규격	F-CV	HIV	VCTF 또는 HIV	UTP 4P CAT5 이상

4. 분전함, 등기구, 콘센트, 간판류 등의 모든 전기 시설물은 접지(녹색)를 하여야 한다.
5. 허용전류
 - 가. HIV 허용전류는 KS C IEC 60364-5-523 표52-C4의 4번에 준한다.
 - 나. F-CV 허용전류는 KS C IEC 60364-5-523 표52-C2의 7번에 준한다.
 - 다. 전선의 굵기는 2.5mm²×3C 이상 일 것(접지선 포함)
6. 전선관 규격
 - 가. 천장 텍스 속의 노출배관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난연성)을 사용 할 것.
 - 나. 천장 내 전선관 고정방법은 트레이 및 달대 볼트에 클램프 및 바인드 선으로 1.5m 이내마다 견고하게 고정 할 것.
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굵기는 내선규정 표4-19-1에 준한다.
8. 분전반 설치
 - 가. 설치 위치 및 전원 공급 계통은 관리주체의 지시에 따른다.
 - 나. 분전함은 철제함으로 시공하고 외함은 필히 접지 시공 한다.
(가정용 플라스틱 분전함 사용금지 및 접지선 굵기는 내선규정 표1-16에 준한다)
 - 다. 전원케이블 포설시 접지선을 설치한다(접지선 굵기는 내선규정 표1-16에 준한다)
 - 라.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전기용품안전기준 또는 KS C 4613의 규정에 적합한 정격감도전류 15mA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전류동작형의 것)를 사용 할 것.
 - 마. 전선관 인입 시 홀스에 의해 커팅 한 후 콘넥터 및 커플링을 연결하여 마감한다.
9. 부득이 조명 회로분리 및 계량기 설치가 필요시 관리주체의 허가를 득한 후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총 전기설비용량은 안전을 등을 고려하여 분전반 차단기 용량의 7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용량보다 초과 시 관리주체로부터 공급전원을 지정받아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주방의 냉·온수 계량기의 원격지침용 선로는 주방바닥 및 벽체시공 시 매립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V. 소방설비공사

1. 소방관련 자체 공사 추진시 공단과 사전 협의
2. 본 공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및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준용한다.
3. 모든 소방기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소방설비에 적용할 제품(스프링클러 헤드, 소화기, 발신기, 유도등, 감지기 등)은 기 설치된 제품의 동등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구획에 따른 감지기, 스프링클러, 유도등, 소화기는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벽체 및 집기 조성 시 스프링클러의 살수반경이 간섭이 되지 않도록 반경 0.6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스프링클러 설치 시 후렉시블 헤드는 고정클립을 이용하여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8. 전선의 규격은 600V 내열용비닐절연전선(HIV) 및 내화케이블(FR-8)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전선관 규격
 - 가. 천정 텍스 속의 노출배관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난연성)을 사용 할 것.
 - 나. 천정 내 전선관 고정방법은 트레이 및 달대 볼트에 클램프 및 바인드선으로 1.5m 이내마다 견고하게 고정 할 것
10.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굵기는 내선규정 표4-19-1에 준한다.
11. 주방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헤드는 사용온도 103°C로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설치분에 대해서도 주방으로 사용되는 곳은 사용온도 103°C로 교체하여야 한다.)
12. 스프링클러 추가 공사 시 소화수를 퇴수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주체에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13. 소화수를 재충압 시에는 24시간 방치 후 이상이 없을 시 보온 등 마무리하여야 한다.
14. 다중이용업소는 소방 수신기 설치시 2층 방재센터의 소방 주수신기와 상호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15. 화기취급작업시 공단 사전허가 필수(업체→공단)
: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및 화기취급작업 안전수칙
16. 피난구 주변 및 방화셔터 하부 장애물(플라스틱 용기, 집기류) 적재 금지: 과태료 대상
17. 음식점 주방 조성시 화재적응성 우수한“K급 소화기” 비치(권장)